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8. 31 선고 2022가단25060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, 최건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8. 31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2019. 2. 25. 체결된,
 - 가.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873,9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 - 나.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858,1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 - 다.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219,84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,951,8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안현정

별지